



산업통상자원부 **FIMEK한국증견기업연합회**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2 사업

이 책자는 「중견기업법」 제23조에 따른 중견기업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신규 지원 중단 또는 접수 마감된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2. 사업

Contents

Ι.	중견기업 정의	·· 1
	1. 중견기업	4
	2. 특례대상 중견기업	5
	3. 중견기업 후보기업	5
	4. 중소기업 유예기간	8
	5. 중소기업의 경과조치	8
	6.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g
	7.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보호대상 중견기업)	g
	8.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 11
	9.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12
	10.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기업	· 13
Π.	부처 및 유관기관	15
	1. 산업통상자원부	· 17
	2. 중견기업 전문기관	· 17
Ш.	중견기업 지원시책	19
((1)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1
	1.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 23
	2. 병역지정업체(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인원 배정	
	3 주겨기어 익자리 반락히	. 2/1

Contents

4.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24
5. 중견기업 스타트업 동반성장지원	25
6. 업종별 협의회 및 중견기업 수출·투자 애로 전담반 ·····	26
7. 중견만리	26
8.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27
9. 중견기업 확인제도	27
10. 라이징 리더스 300	28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9
1.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31
2.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사업	32
3.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33
4.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사업	34
5.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중견-공공연 개방형 혁신 지원)	34
6.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한-독 기술협력센터)	35
7.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35
8.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사업	36
9.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기술개발	37
10.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37
11.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	38
12.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	38
13.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	39
14. DX 한걸음 프로젝트 ······	39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1
1.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수출바우처)	43
2. 세계일류상품	45
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47
4. 지사화사업	48

.

5.	글로벌파트너링 사업(GP사업) ·····	49
6.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 50
7.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수출바우처)	· 51
8.	서비스거점 지원 사업	· 52
9.	글로벌 M&A지원 사업	- 53
10). 해외투자진출지원 사업	. 54
11	.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 55
12	. Invest Korea 외국인 투자 유치 희망 프로젝트 지원 ······	. 56
13	3.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Contact KOREA)	. 56
(4)	한국무역보험공사 ·····	57
1.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	· 58
2.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	. 58
3.	환변동보험	. 59
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60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1
1.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	62
2.	AI바우처 지원사업	62
3.	디지털인프라(SW) 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	63
4.	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 ·····	63
5.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64
(6)	한국에너지공단	65
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	67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68
3.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69
4.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 70
5.	에너지 신산업 금융 지원 사업	· 71

Contents

(7) 한국산업은행	73
1. 기업금융 특별자금	75
2. KDB 경영·재무전략 컨설팅	76
3. 온렌딩 대출	76
(8) 한국수출입은행	77
1.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수출 활성화 프로그램)	79
2.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	79
3. 수입금융(수입자금)	80
4.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80
5.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81
6. 해외사업자금대출	81
7. 해외투자자금대출	82
8.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82
9.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83
10.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83
(9) IBK기업은행 ·····	85
1. IBK강소기업대출 ·····	87
2. 동반성장협력대출	87
3.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	88
4. IBK시설투자대출 ·····	88
5.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 ······	89
6. IBK토지분양협약대출 ······	89
7. IBK스마트공장지원대출 ······	90
8. IBK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 ······	90
9. IBK스마트 동산담보대출 ······	91
(10) 신용보증기금	93
1. 유동화회사보증	95

• • • • • • • • • • • • • • • • •

2.	M&A보증95
3.	매출채권보험96
4.	팩토링96
(11)	기술보증기금97
1.	기술보증제도99
2.	기술이전제도100
3.	지식재산공제제도100
4.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101
(12)	한국디자인진흥원103
1.	디자인-기술협업 인력지원사업105
2.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106
(13)	한국지식재산보호원107
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109
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10
3.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111
4.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112
5.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113
(14)	한국특허전략개발원115
1.	특허전략 지원 사업(IP-R&D 전략지원) ·····117
2.	특허·디자인 융합 IP-R&D 전략지원 사업119
3.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120
(15)	한국자산관리공사121
1.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123
2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123

Contents

(16)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12년
1. 내일치	배움공제 ······· 12 ⁻
2. 중소·	중견기업 계약학과128
(17) 기타	·기관 ······· 129
1. (특허	청) 지식재산권 수수료 감면제도13
2. (관세	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133
3. (관세	청)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4. (고용년	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133
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134
6. (한국	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13.
7. (한국	환경공단)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13!
8. (해외	건설협회)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13!
9. (FTA	종합지원센터)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10. (한국	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36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2. 사업



중소·중견·대기업 비교(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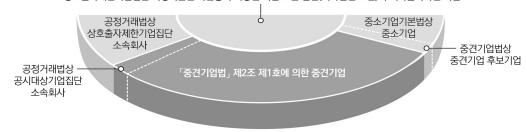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법,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의 본·지	니점 및 연락사무소	
주요 제외대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소(유예)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금융·보험 및 연금업 영위 기업	_	
기준 조건	4개 모두 충족(AND) 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인 기업	4개 중 1개 충족(OR)	2개 중 1개 충족(OR)	
규모기준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이하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초과 (금융·보험 및 연금업 제외)	①「공정거래법」제31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② 자산총액 5천원억 미만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속하는 기업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이하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	※'24년 5월 1일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자산총액 10.4조 적용 ②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8조 제2형에 따른 상호출자	
독립성기준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간접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간접 최다출자자인	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지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및 비영리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자분'의 30% 이상을 직·긴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유예)을 부여함	기업	최다출자자인 기업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채권 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제외	
확인방법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기업집단 편입 및 제외 공문	
식다이티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기업집단포털 (www.egroup.go.kr)	
담당 및 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www.mss.go.kr - 지방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통계분석과 (www.mss.go.kr)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www.motie.go.kr)	기업집단정책과 (www.ftc.go.kr)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알기 쉽게 요약하여 작성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가능함

1 중견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해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이래 ①~⑧의 [중견 기업 제외대생]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말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융·보험 및 연금법,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중견기업 제외대상]

- ①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②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제3호에따른 채권금융기관(부실징후기업, 공동관리절차 및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은 최다출자자에서 제외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 포함)
-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⑥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특별법인 등)
- ①「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공정거래법」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음
- ⑧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 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에 해당하는 기업)
- 상기 [중견기업 제외대생]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의 확인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메뉴를 참고하기 바람

▶ 2 특례대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지원시업 등에 참여하게 함

[중견기업 특례 요건]

- ①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일 것
- ※ 단, 특례별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상이하므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9조의9을 확인하기 바람
-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작성시, <u>특례대상 확인여부에 '예'를 선택</u>하는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에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하여 발급 가능(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 이미 특례 요건 충족 여부가 포함되지 않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u>중견기</u> 업 정보마당 '1:1묻고답하기' 게시판을 통해 담당자에게 별도 요청하기 바람

3 중견기업 후보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을 의미하며,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 ④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 ⑤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받아야 함

[참고]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주된 업종별 규모 기준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4. 1차 금속 제조업	C24	1,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상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А		
8. 광업	В		
9. 식료품 제조업	C10		매출액 700억원 이상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평균매출액등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000억원 초과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	매출액 550억원 이상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00 IE 1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평균매출액등	매출액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800억원 초과	550억원 이상
32. 운수 및 창고업	Н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М		
36. 시업시설관리, 시업자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 (N76 제외)	평균매출액등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초과	400억원 이상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ı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초과	매출액 300억원 이상
43. 임대업	N76	- 40072 24	1 10
44. 교육 서비스업	Р		

※ 비고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초과로 한다.

※ 출처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 (제2조제4항제2호 관련)

4 중소기업 유예기간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통계분석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u>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u>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함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외사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유예기간이 소멸됨

-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유예 등)'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③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속하는 경우
- ④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유예 등)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검토하여 부여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람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발급받아야 함

5 중소기업의 경과조치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통계분석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종전의 규정으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규모 등의 변화가 없음에도 개정된 규정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함

[사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25302호, 2014. 4. 14.)

<u>「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15. 1. 1.)으로</u>,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u>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시행</u>하며,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음

■ 중소기업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검토하여 부여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람

6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중견기업 진입 1~3년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특례 요건]

-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하여 3년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로 문의하기 바람

7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보호대상 중견기업)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 중 <u>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5에서 정한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 기준 미만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u> 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거래하는 연간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말함
- <u>「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의 제1항~제10항</u>까지의 규정은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중견기업(수급사업자)이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함
 -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3조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 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봄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원사업자) 요건]

-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② '①'에 따른 회사가 아닌 시업자로서 연간배출액이 대통령령(2조원)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고하는 시업자
-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동 확인서 내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 충족여부'는 명시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기 바람

[참고]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보호대상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 기준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연간매출액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3,000억원
4. 1차 금속 제조업	C24	미만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А	
8. 광업	В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000억원 미만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0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1,600억원 미만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1 914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Е	
31. 운수업	Н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1,200억원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연간매출액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미만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미킨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2222121	
39.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800억원 미만	
40. 교육 서비스업	Р	-16	

※ 비고

- 1.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2. 해당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
- 3. 제1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중견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출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5 관련)

8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법인세제과 등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u>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매출액 3천억~5천억원 미만, 업종 제한등</u> 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의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마다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바람
- * 조세특례 :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
- 「조세특례제한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중견기업' 범위를 규정할 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준용하고 있음
 - 따라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매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u>'알기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 책자를 발간</u>하고 있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fomek.or.kr) 또는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9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정책총괄과 등

- 「고용보험법」에서는 산업 분류에 따라 <u>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u>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기준을 초과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함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u>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u> 대상기업에서 제외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С	500명 이하
2. 광업	В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Н	
5. 정보통신업	J	300명 이하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3008 4141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М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200대 이글
11. 금융 및 보험업	K	200명 이하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별표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0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기업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따른 <u>금융 및 보험업(K)을 중견기업 제외대상으로 규정</u>하고 있으나, 「<u>공정거래법</u>」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대상으로 보지 아니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u>금융지주회사, 비금융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를 모두 금융</u> 및 보험업(K)으로 분류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u>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u> 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으므로,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 하지만 중견기업의 모든 지주회사들이 「공정거래법」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주회사 행위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제18조제 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중견기업 확인서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아래 [「공정거래법」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 여부 확인 절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바람

[「공정거래법」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 여부 확인 절차]

- ① 「공정거래법」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자산총액 등) 충족 여부 확인
 - * 지주회사 :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 금융지주회사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 * 일반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
- ②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립·전환 신고 여부 확인
- 중견기업의 지주회사(홀딩스) 행위를 하더라도, 상기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지주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K)으로 분류되어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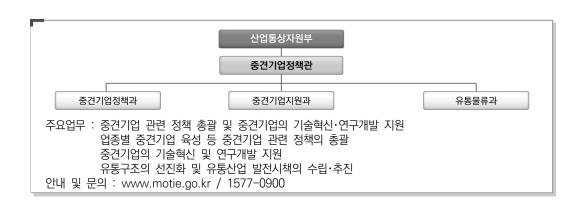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2. 사업

Ⅱ 부처 및 유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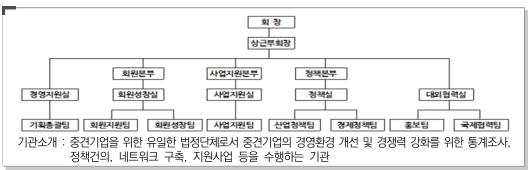
1 산업통상자원부



2 중견기업 전문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안내 및 문의 : www.fomek.or.kr / 대표번호 02-3275-2985				
번호	내용	번호	내용	
 1번	연합회 회원사 가입	5번	기술·생산성 혁신 지원사업	
2번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6번	명문장수기업 문의	
3번	제도 및 정책 문의	7번	중견기업 홍보 지원	
4번	일자리·고용지원 사업	0번	기타 문의	
중견기업 정보마당 안내 및 문의 : www.mme.or.kr / 대표번호 02-3275-2994				
버승	IHQ	버승	IHQ	

번호	내용	번호	내용
1번	시스템 이용 장애	4번	중견기업 범위 기준·제출서류
2번	시스템 회원가입·가입정보 조회	5번	중견기업 통계·실태조사
3번	확인서 발급내역 조회·내용변경	6번	기타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관소개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무역투자진흥기관

안내 및 문의: www.kotra.or.kr / 1600-7119

☑ 「무역보험법」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기관소개 : 무역·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수행하는 기관

안내 및 문의: www.ksure.or.kr / 1588-3884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관소개 : 산업기술혁신 촉진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안내 및 문의 : www.kiat.or.kr / 02-6009-3000

☑ 「산업디자인진흥법」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기관소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디자인 전문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

안내 및 문의: www.kidp.or.kr / 031-780-21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관소개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정보화를 통한 경영혁신을 선도하는 지원기관

안내 및 문의: www.tipa.or.kr / 1357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관소개 :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정책자금 융자, 인력양성 사업지원 등 원스톱 종합지원기관

안내 및 문의: www.kosmes.or.kr / 1357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2. 사업

Ⅲ 중견기업 지원시책

(1)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1.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 2. 병역지정업체(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인원 배정
- 3.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 4.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 5. 중견기업 스타트업 동반성장지원
- 6. 업종별 협의회 및 중견기업 수출·투자 애로 전담반
- 7. 중견만리
- 8.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 9. 중견기업 확인제도
- 10. 라이징 리더스 300

1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 지원개요

■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분야

■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 신청자격

-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견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이공계 출신 인력을 채용한 기업
 - ※ 청년 석·박사 : 만19~39세,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 ※ 기술전문 경력인 :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인건비 최대 3년간, 계약 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인원 제한, 지원한도 있음)

☑ 문의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지원팀 : ☎ 02-3275-309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 ☎ 02-6009-3501

2 병역지정업체(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인원 배정

☑ 지원개요

■ 병역 자원의 일부를 선정 기업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 신청자격

■ 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업, 광업 영위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법인 ※ 동일 법인 내 다수의 공장 지정 가능하며, 업종별 상세 자격 요건은 사업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우선 배정 및 보충역 23개월 고용 보장

☑ 문의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지원팀 : ☎ 02-3275-3093
- 병무청 산업지원과 산업기능요원 담당 : ☎ 042-481-2816

3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 지원개요

■ 우수한 중견기업에 인재확보를 위한 '채용의 장'을 제공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 기업'을 소개

☑ 지원내용

- (일정) 연 2회 개최 예정(5월 21일(화) 서울 코엑스 / 10월 대전 예정)
- (내용) 채용 및 상담부스, 우수기업 채용설명회, 이미지 컨설팅 등 부대행사, 홈페이지 운영 등

☑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지원팀 : ☎ 02-3275-3097

▶ 4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 지원개요

■ 현장수요에 기반한 중견기업 특화형 역량 강화 과정

▼ 지원대상

■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임직원

☑ 지원내용

■ 중견기업신성장동력 역량 강화, 중견기업 ESG 대응 역량 강화,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 중견기업 첫걸음 설명회 등 세미나 개최를 통해 중견기업 특화 교육 진행 ※ 상세 교육 과정은 홈페이지 교육 안내 참고

☑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지원팀 : ☎ 02-3275-0102

■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 🖳 academy.fomek.or.kr

5 중견기업 스타트업 동반성장지원

☑ 지원개요

-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 중견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만남의 장 조성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친환경차 및 e모빌리티 분야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촉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중견-스타트업 협력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 신사업 교육, 밋업 행사(매칭데이), 중견기업-스타트업 협업 기술검증(PoC), 성과공유, 해외진출, 금융지원 등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e모빌리티 관련 완성품·부품의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 중견-스타트업 매칭 지원, 정책연구, 인력양성 등

☑ 문의

-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지원팀 : ☎ 02-3275-0102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성장팀 : ☎ 02-3275-0849

6 업종별 협의회 및 중견기업 수출·투자 애로 전담반

☑ 지원개요

- (업종별 협의회) 업종별 분과회의를 통한 기업 의제 발굴 및 개선, 지원정책 안내
- (중견기업 수출·투자 애로 전담반) 기업 투자와 직결된 규제 및 경영 애로를 집중 발굴하여 중견기업 투자 추진에 대한 선제적·전방위 대응체제 마련

▼ 지원대상

■ 중견기업

▼ 주요내용

- (업종별 협의회) 업종별 분과회의를 통한 기업 의제 발굴 및 개선, 지원정책 안내
- (중견기업 수출·투자 애로 전담반) 규제·투자 애로 수시 접수 및 현장방문, 산업부 실물경제 지원팀·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 개선 지원

☑ 문의처

- (업종별 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정책팀 : ☎ 02-3275-3091
- (중견기업 수출·투자 애로 전담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정책팀 : 🕿 02-3275-2218

7 중견만리

▼ 지원개요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국내 중견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 및 인재확보 지원

☑ 지원내용

■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우수 중견기업을 발굴하여 기술력, 근무환경,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소개(매년 하반기 6~8주 동안 KBS1 TV 방영)

☑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지원팀 : ☎ 02-3275-010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 ☎ 02-6009-3505

8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 지원개요

■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견·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주는 제도(3~4월 신청)

▼ 주요내용

- ■「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 中 업력 45년 이상 기업
- ①서류 접수 및 자격 확인 ②서면 및 현장평가 ③심의 확정 및 수여식 개최 ④제도 홍보 및 운영관리

☑ 우대사항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현판제작 부착 및 마크 활용, 정부포상 우선추천, 매체 홍보, 중기부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 문의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 ☎ 02-3275-2987

9 중견기업 확인제도

☑ 지원개요

■ 중견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

▼ 확인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 ※ 중견기업의 상세 범위는 본 책자 Ⅰ. 중견기업 정의 참고
- ☑ 확인절차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을 통해 신청 및 발급(출력)이 가능하며, 사업장 본점의 전자거래범용, 은행용 또는 중견기업 정보마당 전용 공동인증서 필요
 - ※ 확인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안내는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참고

☑ 문의처

■ 중견기업 정보마당 : ☎ 대표번호 02-3275-2994 🖳 www.mme.or.kr

10 라이징 리더스 300

☑ 지원개요

■ 경제 활력과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중견(후보)기업을 선정하여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

☑ 신청자격

■ 각 유형별 추천기업 선정 후 금융기관의 최종 심사를 통해 확정

지원유형	추천대상(2023년 기준)	추전기관
글로벌 리더형	수출 1천만불 이상 또는 KOTRA 사업 참여 중견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Tech 선도형	주력 및 신산업 영위기업 또는 산업부 R&D 사업 참여 중견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가치 주도형	ESG 경영보고서 발간, 전담 인력 배치 등 ESG 선도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DX도약형	DX 전담부서 운영, DX 투자이력 보유 등 DX 선도 중견기업	한국산업인공지능화협회

[※] 위의 표는 2023년도 기준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각 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2024년 4~5월 중 공고 및 선정(상반기), 9~10월 중 공고 및 선정(하반기) 예정)

☑ 지원내용

■ 여신한도, 금리우대 등 금융 지원 및 전문기관별 연계 지원프로그램 제공

☑ 문의처

■ 글로벌 리더형 : KOTRA 중견기업팀 ☎ 02-3460-7203

■ K-Tech 선도형 : KIAT 중견기업혁신실 ☎ 02-6009-3507

■ 미래가치주도형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정책팀 ☎ 02-3275-3128)

■ DX도약형 : KOIIA 대외협력부 ☎ 070-4361-1820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 2.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사업
- 3.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 4.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사업
- 5.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중견-공공연 개방형 혁신 지원)
- 6.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한-독 기술협력센터)
- 7.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 8.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사업
- 9.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기술개발
- 10.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 11.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
- 12.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 13.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
- 14. DX 한걸음 프로젝트

1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 지원개요

■ 관계·피출자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추진

☑ 지원분야

■ 산업기술 전 분야

☑ 신청자격

- 직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중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서, 관계·피출자 기준을 충족한 중견기업
 - ※ 1)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 이상, 2)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증기율 10% 이상

☑ 지원내용

- 중견기업과 모기업, 외부 혁신주체 간 협력을 통한 신사업·신산업 분야 진출
- 과제당 연간 3억원 내외, 최대 2년 지원 ※ 모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투자 의무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 **2** 02-6009-3505 ⊠ hidsk2@kiat.or.kr

2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사업

☑ 지원개요

■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대상

■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후보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지원분야

- 중견·중소 상생혁신 R&D 부합 30대 신사업 80대 품목
 - ※ '24년도 신규지원과제 수 : 탐색연구(5개 내외), 상생혁신 R&D(2개 내외)

☑ 지원내용

- 탐색연구: 협력 R&D 기술성/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과제당 3천만원, 6개월)
- 상생혁신 R&D :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지원(과제당 39억원, 3년)
 - ※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 R&D' 동시 신청 불가(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신청 가능)
 - ※ 탐색연구 성과가 우수한 컨소시엄은 향후 상생혁신 R&D 선정시 우대. 단,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생혁신 R&D에 지원 가능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 **2** 02-6009-3507 ⊠ boy0707@kiat.or.kr

3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 지원개요

■ 지역 중견기업 및 대학·혁신기관·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전문연구인력 양성·공급, 기술 혁신 역량강화, 지역사회 상생 등을 추진하는 「중견-지역 혁신얼라이언스」 구축·지원

☑ 지원대상

■ 중견기업(필수 참여) 및 해당 지역 내 혁신기관(대학, 연구기관, 연관 협·단체, TP 등)으로 구성된 지역 컨소시엄

☑ 지원분야

■ 전 산업분야

※ '24년도 신규지원과제 수 : 2개 내외

☑ 지원내용

■ 네트워킹, 공동기술 개발, R&D 전문인력 양성 등

구분	내용
네트워킹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구성, 운영 등 최대 5년간 지방비를 통한 지원
공동기술 개발	(추진내용) 중견기업 필요기술을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등과 공동 개발 (지원내용) 교육과정 운영 필요자금에 대한 국비지원(평균 6억원/5년)
R&D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형) 해당 중견기업의 재직자에 대한 석/박사 학위교육 실시 (신규채용연계형) 학생의 취업 및 기업의 채용 의사를 전제로 석/박사 신입생 선발 (추진내용) 중견기업 필요기술을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등과 공동 개발 (지원내용) 교육과정 운영 필요자금에 대한 국비지원(평균 3억원/5년)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 02-6009-3504 ⊠ cji8195@kiat.or.kr

▶ 4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사업

☑ 지원개요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형 R&D 협업촉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치사슬 구축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중견기업(후보기업)과 공공연구기관

▼ 지원분야

■ 중견기업 유망 15대 핵심산업 분야 내 자유공모

☑ 지원내용

■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개발·사업화를 추진하는 중견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형 R&D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 **☎** 02-6009-3508 ⊠ sunyp@kiat.or.kr

▶5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중건 공공연 개방형 핵신 재원

▼ 지원개요

■ 중견기업과 우수 연구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간의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경쟁력 향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분야

■ 중견 15개 핵심산업분야 중심으로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중점 육성 분야

☑ 지원내용

■ 고난도 혁신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공공연구기관과의 R&D(사업화) 공동 기획을 통한 개발전략 수립 등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 **2** 02-6009-3510 ⊠ kimbych@kiat.or.kr

6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한-독 기술협력센터)

☑ 지원개요

■ 우수한 R&D 역량과 기술인력을 보유한 독일의 연구기관·대학·기업과 국내 중소·중견기업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기술역량 확보와 시업 기회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또는 최근년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산업기술 전 분야

☑ 지원내용

■ 해외 사무공간 및 글로벌 기술협력 파트너 연결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실 : 2 02-6009-3507 ⊠ boy0707@kiat.or.kr

☑ 지원개요

■ 국내 솔루션 기반의 주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 확산

☑ 지원대상

■ 디지털 솔루션 도입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분야

■ 제조공정(구매·자재, 생산, 검사, 출하, 재고관리 등) 및 경영(조직관리, 신사업, 마케팅, 언텍트 근무 등) 분야의 디지털 전환

☑ 지원내용

■ 디지털 전환 수요 중견기업에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적용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실: ☎ 02-6009-3506 ⊠ kimbych@kiat.or.kr

8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사업

☑ 지원개요

■ 글로벌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중견기업(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1조 미만)

☑ 지원분야

■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글로벌 수요에 맞는 부가적 가치(기능, 성능 등)를 혁신한 프리미엄 기술 R&D

☑ 지원내용

- 총 협약기간(상용화 기간 포함) 정부출연금 최대 15억원 이내(정부출연금 50%, 민간 부 담금 50%)
 - ※ (R&D 상용화 성공) 정부자금 인센티브 방식 제공(先 1/5 → 後 4/5)
 - ※ 단, 기술개발 실패(불성실 수행) 시 후불 지급 無, 先 지원금 회수
 - ※ (지원기간) 2~3년(+상용화 기간 1~3년, 5년 이내)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2 02-6009-3531 ⊠ sunking@kiat.or.kr

9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기술개발

☑ 지원개요

■ 글로벌 성장 잠재력과 기술혁신 역량 보유 기업의 중장기 미래전략 및 원천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선정 기업 중 R&D 미수혜기업) ※ R&D 미지원 선정 기업 중 중견기업 또는 매출 400억원 이상 후보 중견기업

▼ 지원분야

■ 월드클래스300 기업의 성장전략서에서 제시된 기술 확보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 및 응용기술 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연간 정부출연금 최대 10억원 이내(최대 4년 이내) ※ 정부출연금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의 50% 이내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 02-6009-3527 ⊠ je1234@kiat.or.kr

10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 지원개요

■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후보)기업의 성장촉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분야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 신청자격

■ 매출액, 수출비중, R&D 집약도 등을 충족한 중견(후보)기업

▼ 지원내용

- (R&D) 최대 4년, 30억원 내외 (연평균 7.5억원) 지원
- (비R&D)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 02-6009-3531 ⊠ sunking@kiat.or.kr

11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

☑ 지원개요

■ 중견기업의 성장애로 극복과 재도약 지원으로 성장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분야

■ 제조업 및 정보통신업 분야 중견기업 및 중소 회귀 기업

☑ 신청자격

■ (주관) 1단계 사업(기술타당성연구) 수행기업 (공동)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내외/년 ※ 지원 규모는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 **☎** 02-6009-3503 ⊠ cejang@kiat.or.kr

12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 지원개요

■ 디지털 혁신을 원하는 중견(후보)기업과 DNA(Data, Network, AI)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 간 산학 공동연구 지원

▼ 지원분야

■ 디지털 혁신 분야

☑ 신청자격

- 중견(후보)기업 또는 대학*
 ※ 최소 1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 중인 DNA대학
- ☑ 지원내용

■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내외/년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 2 02-6009-3503 ⊠ cejang@kiat.or.kr

13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

▼ 지원개요

■ 우수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분야 진출 촉진

☑ 지원분야

■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및 한국판 뉴딜 분야

☑ 신청자격

■ (주관) 중소·중견기업 (공동)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1개 필수 등

▼ 지원내용

- R&D성과 기술을 보유 기업의 BM 기획 및 상용화 추가 기술개발 등 신제품 개발 지원
- 과제당 4.441억원 내외, 17개 과제 지원 예정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 ☎ 02-6009-3641 ⊠ jth@kiat.or.kr

14 DX 한걸음 프로젝트

☑ 지원개요

■ 디지털 전환(DX) 연구 개발 및 성공사례 확산 지원

☑ 지원분야

- 10대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 R&D ※ 기계로봇, 섬유화학, 에너지, 미래차, 가전전자, 유통물류, 헬스케어, 조선, 뿌리, 철강

☑ 신청자격

■ (주관) 중소·중견기업 등 (공동) 대·중소·중견기업, SI 기업, 업종별 협·단체 등 컨소시엄

☑ 지원내용

- 과제당 연 6.5억원 내외 ※ 본 사업의 목적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성과와 효과(기업 기밀사항 제외) 등은 공개됨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02-6009-3643, ⊠ ysk9003@kiat.or.kr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수출바우처)
- 2. 세계일류상품
- 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 4. 지사화사업
- 5. 글로벌파트너링 사업(GP사업)
- 6.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 7.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수출바우처)
- 8. 서비스거점 지원 사업
- 9. 글로벌 M&A지원 사업
- 10. 해외투자진출지원 사업
- 11.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 12. Invest Korea 외국인 투자 유치 희망 프로젝트 지원
- 13.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Contact KOREA)

▶1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수출바우처)

▼ 지원개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신청자격

■ 강소·중견 중 직전년도('23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이며 아래 세부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유형	요건
내수중견	중견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 미만 이거나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 ※ 단, 기존 참여기업은 지원기간(최대 3회) 限 신청 가능
Jumping 중견 글로벌	예비 중견기업
중견 글로벌	월드클래스300 기업,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중견기업
Post 중견 글로벌	중견 글로벌 5회 참가기업

* 지원 사업 우대 대상 기업 : ①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②WC300, WC Plus 선정기업, ③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④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 선정기업 , ⑤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⑥녹색 인증기업, ⑦ ATC(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 선정기업, ⑧ 소부장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⑨ 탄소혁신스타즈 프로젝트 선정기업, ⑩ 고용창출 우수기업(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증 증빙 제출), ⑪ 그린관련 인증 (수소전문 기업, 녹색혁신기업, 친환경 경영시스템, 녹색경영시스템, 로하스, 저탄소제품, 환경표지), ⑫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라이징 리더스 300) 참여기업

☑ 지원내용

- 참가기업 수출전문위원(KOTRA본사) 무역관(KOTRA해외) 3자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해외마케팅 서비스(단독 로드쇼·기술세미나 등 고객행사, 전문 전시회 참가, 홍보, 시장조사, 세일즈랩 운영, 법인설립 등) 지원
- 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해외시장 분석을 통해 목표시장을 선정하여 진출전략, 액셜플랜 (로드맵) 수립 지원 및 실행
- 사업단계별 바우처 발급 가능

【유형별 지원내용】

_					
	구분	내수중견	Jumping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Post중견글로벌
	지원기간	최대 3회	최대 5회	최대 5회	최대 5회
	지원규모 300개사 내외				
Н	l우처 발급액* (⋽+ⓒ)	1억원	1억원	(중소) 1.3억원 (중견) 2억원	2억원
	국고보조율 /금액⊙	70% / 최대 7,000만원	70% / 최대 7,000만원	(중소) 70% / 9,100만원 (중견) 50% / 1억원	30% / 6,000만원
	자비분담율 /금액©	30% / 최대 3,000만원	30% / 최대 3,000만원	(중소) 30% / 3,900만원 (중견) 50% / 1억원	70% / 1.4억원

^{*} 내수중견 단계 참가횟수 제외 총 참가기간 10회 초과 불가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견기업팀 : ☎ 02-3460-7238, 7233, 7246

www.exportvoucher.com

^{*} 발급액은 유형별 발급가능한 최대 수준이며, 상한선 내에서 협약액 선택 가능

2 세계일류상품

☑ 지원개요

■ 수출 품목의 다양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하고, 마케팅·금융·컨설팅 등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서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

☑ 신청자격

■ 현재 세계시장을 주도하거나(현재 일류) 향후 세계시장을 주도(차세대 일류) 기능한 상품·기업

구 분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현재 일류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 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 단, 서비스업 상품은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의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이내 2.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생산업체 중 1위 3.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전체 수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차세대 일류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상품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정 가능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3위 이내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이나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 수상 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 지정 *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정 가능

☑ 지원내용

■ 선정기업에 인증서·로고를 부여하고 KOTRA 포함 11개 전문기관이 인증·교육, 금융·컨설팅, 연구개발, 판로확보 등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직접지원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및 로고 부여 World-class Product Show 등 해외마케팅 사업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선정 우대 지사화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간접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활용 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우대 혜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 한국공인검사원: 검사 및 인증비용 할인, 국제규격 교육비 면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력양성 사업선정 우대,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가점, 섬유패션 FTA 활용 및 진단 컨설팅 지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자전 참가비 할인, NCS컨설팅 지원 IBK기업은행: 해외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해외 제휴은행 고객매칭 등 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기업선정 시 우대 무역보험공사: 보증・보험 한도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혜택 신용보증기금: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 및 보증요율 우대 기술보증기금: 우선적 보증지원 및 보증한도 상향, 기술 평가항목 반영 산업부: 무역의 날 유공자, 세계일류유공자 포상 가점

^{* &#}x27;23년 기준이며, 지원내용은 해당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견기업팀 : **☎** 02-3460-7231, ⊠ wwcp@kotra.or.kr

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 지원개요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초보기업 대상으로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무역 실무부터 해외 파트너 발굴, 계약 이행까지 밀착 지원

☑ 신청요건 및 선정절차

구분	주요내용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23년도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전세계 수출실적이 0~10만달러인 기업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은 제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제외대상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종교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국가, 지자체 등
선정절차	· (서류평가) 신청 요건 충족,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역량진단(GCL) 테스트 실시유무 등 ·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 대상으로 신청서 내용 등 기업 실태조사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수출멘토링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기업과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맞춤형 무역실무 안내, 바이어 교신 지원, 수출지원사업 안내 등 수출 멘토링 지원	
영문 카탈로그 제작	영문 카탈로그 미보유 기업 대상으로 1page 영문 카탈로그 제작 지원	
과거 바이어 재접촉	KOTRA 해외무역관 활용, 과거 수출했던 바이어 대상으로 재거래 의사를 확인하고, 미희망시 사유 조사 시행	
B2B 플랫폼 마케팅 지원	B2B 플랫폼 입점부터 디지털 수출전문위원 활용 인콰이어리 대응 등 밀착 지원	
인콰이어리 발굴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유망 잠재 바이어의 수입수요 발굴 및 화상상담 지원	
유관기관 연계지원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유관기관 전문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혁신기업팀 : ☎ 02-3460-3272, 7546

4 지사화사업

☑ 지원개요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참가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6개월	240만원
발전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1년	300 ~ 500만원 (지역별 차등)

^{*} 상세 지원내용은 사업 공고문 참고

☑ 지원인력

■ 82개국 125개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사화 전담직원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전흥공사 자사회물류팀: **2** 02-3460-7439, 7441, 7445 및 www.exportvoucher.com

^{*} 참가비는 신청 1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수출바우처로 납부 불가

5 글로벌파트너링 사업(GP사업)

☑ 지원개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기업의 수요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을 매칭하여 국내 기업의 GVC 편입을 지원

☑ 신청자격

■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기업 GVC에 편입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

▼ 지원내용

-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기업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해외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무역관이 발굴하고 적합한 국내기업을 매칭, 상담 등을 통해 성약 지원
- (GP상담회) 북미·유럽·일본·중국 등 주요 시장별 글로벌 기업의 소싱 및 기술 협력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매칭
- (GP센터)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 소재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지 마케팅,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는 해외 GP센터(현 10개소) 운영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재부품장비팀 : ☎ 02-3460-3224

6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 지원개요

■ 해외에 독자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KOTRA 협력 물류회사의 창고 공동 이용을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에서 수출 중(예정 포함)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해외 현지창고 보관,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및 수출 마케팅 서비스 지원
- 매칭펀드 지원(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국고 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한도 총액(A+B)
참가비(A) 30만원 ~ 600만원 국고지원(B) 70만원 ~ 1400만원	참가비(A) 50만원 ~ 1000만원 국고지원(B) 50만원 ~ 1000만원	최소 1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지원기간 : 해당연도 1월 1일 ~ 11월 30일까지 (차년도 이월 불가)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사화물류팀 : ☎ 02-3460-7445, 7430, 7435

7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수출바우처)

☑ 지원개요

■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 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신청자격

■ 각 산업별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산업	요건
소재·부품·장비	기초소재, 제약, 가전·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항공부품, 조선 기자재, 전력·플랜트, 기계·중장비, 의료기기, 반도체·디스플레이, ICT
그린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전력, 그린 모빌리티, 환경,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저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소비재	화장품·뷰티, 식품,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패션·의류
서비스	에듀테크, 콘텐츠, 프랜차이즈, IT 서비스

^{*} 공통 적용사항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 제외

☑ 해외 진출 시 필요한 14대 분야* 수출 지원서비스 제공

※ 조사·일반 컨설팅,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관리, 홍보 동영상,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전시회·행사·해외영업,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 홍보·광고, 국제운송, 서류대행·현지등록, 법무·세무·회계·컨설팅, 무역보험·보증

■ 각 산업별 바우처 총액(최대)

산업	바우처 발급액	국고보조율
소재·부품·장비	진입(2천만 ~ 5천만 원)	
그린	· 성장(2천만 ~ 7천만 원) · 확장(2천만 ~ 1억 원)	(ろん)700/ (ろづ)500/
소비재	진입(2천만 ~ 3천만 원)	(중소)70%, (중견)50%
서비스	성장(2천만 ~ 5천만 원) 확장(2천만 ~ 5천 5백만 원)	

^{*} 타 수출바우처와 중복 신청 불가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바우처팀: ☎ 02-6004-8400 및 www.exportvoucher.com

8 서비스거점 지원 사업

☑ 지원개요

■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서비스 기업의 현지 거점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 외 진출 밀착 지원

☑ 신청자격

■ 서비스 수출 및 해외 진출 희망 국내 중소·중견 기업

유형	카테고리
콘텐츠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캐릭터), OTT(영화·영상) 등
에듀테크	교육, 기자재 및 온라인 서비스, 코딩, 외국어 등
프랜차이즈	외식, 도·소매, 기타 서비스 등
스포츠테크	디지털 스포츠 콘텐츠, 영상·중계 기술 등
 ICT서비스, 융·복합 서비스	S/W, IT솔루션, 핀테크, 물류·유통 등

☑ 지원내용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희망 서비스거점 무역관이 국내기업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제반의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참여기업 대상 전담직원을 활용하여 관심 바이어 발굴, 현장지원, 시장조사, 법인설립, 현지 (출장) 지원, 전시회 참가, 기업별 요청처리 등 서비스 제공

☑ 24년 서비스거점 무역관(30개소)

	핵심 서비스거점 (11개소)	일반 서비스거점 (19개소)
구분	전담직원有 / 거점당 7개사 이상 지원	전담직원無 / 거점당 1-3개사 지원
무역 관	(북미) LA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상하이 (동남아)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싱가포르 (유럽) 런던 (중동) 두바이	(북미) 실리콘밸리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중국) 선양, 홍콩, 타이베이, 항저우, 청두, 창춘, 칭다오 (동남아)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비엔티안, 다낭 (유럽) 프랑크푸르트, 밀라노, 베오그라드 (중남미) 멕시코시티 (CIS) 울란바토르

☑ 참가비

■ 서비스거점 무역관당 25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비스산업팀 : **☎** 02-3460-3251 ⊠ siheo@kotra.or.kr

9 글로벌 M&A지원 사업

☑ 지원개요

■ 해외 M&A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영업망 확보, 지적재산권(IP) 인수, 해외 생산 거점 구축, 신사업 발굴 등 지원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유형	내용
M&A 전략수립 지원	해외 M&A 전략 수립이 필요한 기업에 시장 및 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해외 M&A 매물 제공	관심 지역 및 관심 분야에 대한 M&A 매물발굴 및 제공
해외 실사 지원 서비스	M&A · 사전실사 및 · 본실사 과정 지원
인수 후 통합과정 지원	해외 타겟 기업 인수 후 통합 과정(PMI) 지원
M&A 실사 비용 지원	외부 자문사에 지급한 자문 비용의 최대 50% 사후 지원 (4천만 원 한도 내)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M&A팀 : ☎ 02-3497-1110

10 해외투자진출지원 사업

▼ 지원개요

■ 해외 진출이 활발한 국가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정착 지원, 맞춤형 바우처를 통한 전반적인 해외 투자진출 컨설팅 서비스 제공,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및 투자실무가이드 발간을 통한 정보 제공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지 운영 관련 애로해결 지원 및 전문가 상담지원,
-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현지 법인 설립 지원,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해외 주재 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구축
- 현지 투자환경 관련 뉴스레터 발송,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및 국별 투자실무가이드 를 통한 현지 시장 정보 제공, 현지 노무·세무·법무 등 해외투자 이슈 대응 및 경영정보 관련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해외투자진출지원 유료(바우처) 서비스 운영(해외진출 단계에 따라 현지진출을 위한 기초시 장조사부터 투자 협력사 및 바이어 발굴리스트 제공까지 서비스)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M&A팀 : ☎ 02-3460-7358

11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 지원개요

■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철수와 국내복귀 전 과정에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신청자격

-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산업, 산업발전법 상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2년 이상 정상 영업 활동을 하였을 것
-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개인)일 것
 - *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개인, 재외동포, 외국인투자기업 가능) 당사자가 종속사업장 중 지원받을 투자사업장명으로 신청
-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 * 해외사업장 청산, 양도, 생산량 축소(매출액 25% 감축)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 국내사업장 투자
 - *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상 동일)으로,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투자유형 중 한 가지를 이행할 것

☑ 주요 지원내용

- 투자·이전보조금 : 지원비율 11~50%, 이전비(4억원)포함, 사업장당 국비 최대 300억원 한도
- 조세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 (법인세·소득세) 최대 7년간 100%+3년간 50% 감면(국내사업장 신설·창업·증설)
 - (관세) 신규·중고 자본재 수입관세 최대 100% 감면
- 인력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E9비자) 지정알선 및 추가 고용 허용 등
- 스마트공장 : '고도화1'3억원, '재신청'7천 5백만원, '로봇활용지원사업'2.5억원 한도
- 구조조정컨설팅 : 철수·축소 최적모델 제안 및 대행 지원, USD 2만 한도(30~70% 지원)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복귀지원팀 : ☎ 02-3460-7361~4

12 Invest Korea 외국인 투자 유치 희망 프로젝트 지원

☑ 지원개요

■ 해외 잠재 투자가 발굴·매칭 지원

☑ 신청자격

■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지자체 및 FEZ 등

☑ 주요 지원내용

■ Fact Sheet 자료(투자홍보물) 영문·중문·일문 제작, Invest Korea 홈페이지 등재·홍보, 해외무역관을 통한 적격 투자가 발굴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참가 기회 제공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산업유치팀 : ☎ 02-3460-7859

13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Contact KOREA)

☑ 지원개요

- 국내기업에 필요한 기술, 경영, R&D인력 등 해외 전문인력 발굴, 이력 확인, 면접 주선, 채용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 E-7(특정활동) 비자 취득 지원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 지원

☑ 신청자격

- 대한민국 내 사업자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대학교, 정부 및 공공기관(무료)
- 대기업(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110만원, VAT포함)

☑ 지원내용

구분	내용
글로벌인재 발굴 서비스	기업 수요에 맞는 해외 전문인력 발굴 서비스
고용추천서 발급 서비스	E-7(특정활동) 비자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 서비스
기타 인재유치 서비스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연 1회, 하반기)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인재센터: **☎** 02-3460-7395 ⊠ contactkorea@kotra.or.kr

(4) 한국무역보험공사

- 1.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
- 2.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 3. 환변동보험
- 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1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

☑ 지원개요

■ 수입자 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 신청자격

■ 수출자 신용등급 G급 이상(K-SURE 기준) 전년도(최근 1년간) 수출실적 50백만불 이하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담보위험 : 비상위험, 신용위험, 클레임 위험(중소 특약)

■ 대상거래(결제기간 1년(중소)180일(중견) 이내 : 일반수출, 위탁가공 무역, 중계무역

■ 책임금액(무신용장 및 신용장 거래): 150만불(중소, 쾌임위험: 5만불 이네), 450만불(중권) 이내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3884

▶ 2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이 소재 부품·장비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은 후, 상환하지 못하 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 신청자격

■ KSURE 신용등급 E급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뿌리산업, 방위산업 업종 중소 중견 제조업체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상거래	대출기간 1년 이내의 수입자금 대출거래 - 중계무역 또는 일부 품목 수입자금 제외
인수한도	수입실적과 수입자 등급 감안하여 소요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
최장대출기간	1년 이내
부보율	90%이내(단, 금융기관 협약시 협약에 따름)

^{*} 상세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3884

3 환변동보험

☑ 지원개요

■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

☑ 신청자격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일반형	환율 하락 시 손실보상,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완전보장 옵션형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금 납부 의무 면제, 환율 하락 시 하락분 전액 보상
부분보장 옵션형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금 납부 의무 면제, 환율 하락 시 일정수준까지 보상

^{*} 싱세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3884

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 신청자격

■ KoDATA 신용등급 B-이상이면서 공사가 정한 신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보증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보증서 유효기간 종료시 재보증심사를 통해 연장)
보증한도	수출자의 연간 통관수출실적 기준으로 책정 (업체당 최대 중소 U\$700만, 중견 U\$1,000만)
대상거래	모든 수입자와의 대출기간 180일이내 무신용장 통관수출거래
보증비율	90% 이내

^{*} 싱세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3884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1.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
- 2. AI바우처 지원사업
- 3. 디지털인프라(SW) 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
- 4. 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
- 5.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 1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

☑ 지원개요

■ 산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전환 전문(공급)기업의 유망 솔루션 실증 및 해외진출 등을 통한 디지털 전문기업 육성

☑ 신청자격

■ 제조·서비스 등 산업 내 수요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공급) 기업으로 국내 법인사업자(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수요기관 커스터마이징, 실증·시범적용, 테스트 및 상용화 등 솔루션 실증 지원
- 유망 디지털 전환 솔루션 기업의 글로벌 현지화 및 해외 수요기업 연계 등 지원
- 본 사업 선정기업의 경우 국내 수요처 보급·확산 기회 부여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성장팀 : 2 043-931-5557 및 www.nipa.kr

▶ 2 AI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개요

■ AI 솔루션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AI 솔루션을 구매·활용하고. 비용은 AI바우처로 지급

☑ 신청자격

■ 수요기업 : AI 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중소/벤처/중견기업, 의료법상 의료기관 등

■ 공급기업 : 자체 AI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AI 기업

☑ 지원내용

■ 정부(NIPA)가 수요기업에게는 AI 솔루션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3억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공급기업에게는 판매한 AI 솔루션에 대한 대금 지급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1544-3816 🗕 www.nipa.kr

▶3 디지털인프라(SW) 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

☑ 지원개요

■ 교통, 재난관리,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의 SW 오작동 문제 등을 사전 진단 및 개선 지원함으로써 잠재적인 SW안전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

▼ 신청자격

■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 SW를 개발, 운영하거나 유지보수 하는 민간기업(중소·중견기업 우대) 또는 공공기관

☑ 지원내용

■ 시스템(SW), 운영기반 등 3개 집단영역의 8개 진단항목을 무료 진단 및 개선 지원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안전팀 : ☎ 043-931-5465 🖳 www.nipa.kr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W시스템안전센터 : ☎ 010-5111-1285

▶ 4 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

☑ 지원개요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비즈니스 현안을 SW공학기술 도입·적용과 내재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SW품질경쟁력 강화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수행기업)과 컨설팅기관 간 컨소시엄 ※ 단, 대기업은 기술검증 주관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1차년도)SW공학기술 도입·적용 (2차년도)개선 및 내재화 지원
- 과제당 1.3억원 이내(민간부담금은 25% 이상 유지 필수)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043-931-5462 🖳 www.nipa.kr

▶5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 지원개요

■ 발전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성능 검증 등을 통해 상용 서비스 가능성 확대

☑ 신청자격

■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중견·중소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 단, 대기업은 기술검증 주관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 검증 비용 지원
- 과제당 4.3억원 이내(대 50%, 중견 70-75%, 중소 80% 이내 국고 지원)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플랫폼팀 : 2 043-931-5084 🚨 www.nipa.kr

(6) 한국에너지공단

- 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
-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 3.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 4.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 5. 에너지 신산업 금융 지원 사업

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

☑ 지원개요

■ 산업체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에너지 사용현황 실시간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 경영시스템 인프라와 구축된 인프라를 활 용한 실질적 에너지절감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사업 총 투자비의 70%(중소기업) 40%(중견기업)에서 최대 2억원 한도 지원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 대표번호(052-920-0391) 및 www.energy.or.kr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 지원개요

■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장기저리의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대기업 ESCO(중소·중견 사업자를 에너지사용자로 하는 경우)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지원비율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ESCO투자사업		소요자금 100% 이내	300억원 이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절약시설설치사업		소요자금	300억원 이내	
	생산시설설치사업	70%	50억원 이내	
절약시설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이내	50억원 이내	3년 거치
설치사업	장기사용열수송시설개체사업	소요자금 100% 이내	50억원 이내	5년 분할상환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 대표번호 052-920-0492 🖳 www.energy.or.kr

3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 지원개요

■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계측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시장 창출 선도

☑ 지원대상

-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및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중기업) 및 비영리 법인 사업장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기업

☑ 지원내용

- (지원 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등 전력수요절감이 예상되는 지정설비· 시스템 중 1종 이상 품목
- (지원 사업) 사업장이 신청한 전체 설비개체에 따른 피크감축예상량이 △5kW 이상으로 전기절감예상액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

☑ 지원조건

- 기업규모별 설비설치비의 40~70% 이내 차등 지원
 - 효율향상설비 개체, 계측전송장치 구축(신청설비 1개당 최대 100만원, 베이스라인 설정 및 절감량산정 지원, 사업운영·관리(사업장단 최대 500만원) 등

기업규모	지원한도	지원비중
중소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설비설치비 70%이내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설비설치비 40%이내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 대표번호 052-920-0354 🗏 www.energy.or.kr

4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 지원개요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

☑ 지원분야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

☑ 신청자격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 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등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 대표번호 052-920-0392 🗏 www.energy.or.kr

▶ 5 에너지 신산업 금융 지원 시업

☑ 지원개요

■ 신성장동력 창출 수단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초기시장 조성 및 민간투자 유도를 위하여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추진

☑ 지원분야

-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
 - ※ ESS,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열 활용, 수요자원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에너지신기술또는 ICT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 신청자격

■ 중소·중견·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지원내용

- 소요자금의 90%이내(중견기업 70%, 대기업 40%이내) 이내 지원
- (지원한도·금리) 동일 사업장당 50억원, 변동금리 적용
- (대출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시설자금),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운전자금)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 대표번호 052-920-0484 🖳 www.energy.or.kr

(7) 한국산업은행

- 1. 기업금융 특별자금
- 2. KDB 경영·재무전략 컨설팅
- 3. 온렌딩 대출

1 기업금융 특별자금

☑ 지원대상

■ 주요 상품별 지원대상

	구분	상세내용
첨단·미래	초격차산업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산업 영위 기업
유망산업 육성	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	'혁신성장 공동 기준' 분야 관련 기업
74711011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자금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기업
경제안보 역량강화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수출실적이 있거나 신규 수출판로가 확인된 중소·중견기업
7004	설비투자 촉진 지원자금	국내 설비투자 관련 기업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자금	지방이전 기업,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내 공장부지 분양 기업
지역경제 르네상스	일자리창출기업 지원자금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국가 및 지자체 선정 고용(일자리) 우수기업, 세제상 고용확대 기업, 국내 복귀 해외진출 기업, (시도교육청 선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중소·중견기업(대출기간 중 고정·변동 금리 전환 가능)
	동반성장 지원자금	대기업 협력 중소·중견기업
	그린·디지털 대전환 특별자금	녹색금융·디지털전환 관련 기업
	시업구조전환 지원자금	사업재편 추진기업
시업구조 체인지업	스마트공장 지원자금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신축·구입, 설비구입, 개보수·증축, 혁신성장 공동 기준 품목 관련 공장 신축 또는 구입 스마트제조 공급 기업의 생산시설 신축·구입, 설비 구입, 개보수, 증축
	KDB 탄소스프레드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관련 설비투자 ■ 저탄소생태계 육성 관련 K-Taxonomy상 녹색 경제활동
	친환경사회조성 자금	친환경사회 조성 관련 K-Taxonomy상 녹색 경제활동
	에너지전환 자금	에너지 전환 관련 K-Taxonomy상 녹색 경제활동
중견기업	중소·중견 지원자금	중소·중견기업, 기타기업(공공기관 제외)
부스트업	동산·채권 담보대출 지원자금	동산·채권 등을 선순위 근담보권 설정 기능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대출기간) 20년 이내(시설), 3년 이내(운영,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1년 이내 단위로 연장 가능)

☑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1500

▶ 2 KDB 경영·재무전략 컨설팅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기업경영 컨설팅 관련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가 네트워크 및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 % 비전 및 중장기경영전략 수립, 제품/사업별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Pre-M&A, PMI 등 M&A 관련 컨설팅, 사업 및 재무상태 진단 등

☑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1500

3 온렌딩 대출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시설·운영자금 지원(일반·특별 온렌딩)
- (대출기간) 1년 이상 10년 이내(시설), 1년 이상 3년 이내(운영)
- (거치기간) 3년 이내(시설), 6개월 이내(운영)
- (상환방법) 분할상환(시설), 분할·일시 상환(운영)
 - ※ 신산업 육성, 수출기업 지원, 지방소재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또는 대출한도 추가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1500

(8) 한국수출입은행

- 1.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수출 활성화 프로그램)
- 2.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
- 3. 수입금융(수입자금)
- 4.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 5.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 6. 해외사업자금대출
- 7. 해외투자자금대출
- 8.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 9.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 10.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1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수출 활성화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상생대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상품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촉진자금 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 02-6252-3418

▶ 2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상생대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상품 : 해외투자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이행성

보증, 수출팩토링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 02-6252-3418

3 수입금융(수입자금)

☑ 지원대상

■ 국가경제의 성장, 국민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기업 (단,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 물품 등 제외 / 에너지 물품은 포함)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출금액	• 수입금액 또는 수입선급금액의 80% 이내(중소기업, 우대중견기업 및 연구기관의 경우 9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지원대상물품 등에 대한 과거 수입실적(개발수입 및 시설재수입 실적 제외) 기반으로 지원 가능 (대출기간 6개월 : 수입실적의 90% 이내, 대출기간 1년 : 수입실적의 60% 이내)
대출기간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 2년 이내, 실적기반 지원시 : 6개월, 1년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및 2부 : ☎ 02-6252-3418, 3468
- 각 지역별 지점

4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 지원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 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대출금액

구분	주요내용
대출금액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9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 단,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기업별 대출한도 500억원 (수출규모 등에 따라 800억원까지 증액 가능
대출기간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및 2부 : ☎ 02-6252-3418, 3468
- 각 지역별 지점

5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 지원대상

■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기업,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콘텐츠의 제작·공급·유통을 추진하는 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기업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 시설투자,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 수출기업 인수 및 제작자금 용도 등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 시설투자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5년 이내 • 기술개발, 수출기업 인수, 제작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및 2부 : ☎ 02-6252-3418, 3468
- 각 지역별 지점

6 해외사업자금대출

☑ 지원대상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80% 이내(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및 2부 : ☎ 02-6252-3418, 3468
- 각 지역별 지점

7 해외투자자금대출

☑ 지원대상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 해외직접투자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기간 1년 미만의 대출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80% 이내(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에서 사업의 특성, 지금 실소요기간을 감안한 기간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및 2부 : ☎ 02-6252-3418, 3468
- 각 지역별 지점

8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 지원대상

■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 시설자금, 직접투자자금, 운영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이내(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 운영자금의 경우 설립 5년 이상 대기업 매출액의 30%, 5년 미만 설립초기 및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한도 우대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및 2부 : ☎ 02-6252-3418, 3468
- 각 지역별 지점

9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금융서비스
 - ① 통화전환옵션 :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
 - ② 선물환거래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수입계약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함으로써 고객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해외투자정보(국제지역정보, 산업경제정보, 해외투자통계) 제공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 02-6252-3418

10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은 정부인증기업과 각 시·도별 선정한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선도기업

☑ 지원내용

■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반에 걸친 맞춤형 금융 제공,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수출성장자금 취급시 수출실적 인정한도 확대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 02-6252-3416

(9) IBK기업은행

- 1. IBK강소기업대출
- 2. 동반성장협력대출
- 3.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
- 4. IBK시설투자대출
- 5.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
- 6. IBK토지분양협약대출
- 7. IBK스마트공장지원대출
- 8. IBK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
- 9. IBK스마트 동산담보대출

▶1 IBK강소기업대출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부문	대상기업
수출	•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연간) 이상인 수출기업 • 외국인투자금액 USD 100,000불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기술	• 기술력평가인증등급 우수기업, IBK강소기업 등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문화 콘텐츠	• 당행 선정 문화콘텐츠강소기업(IBK)

☑ 지원내용

- (운전자금) 일시상환(1년 이내), 분할상환(5년 이내)
- (시설자금) 일시상환(3년 이내), 분할상환(15년 이내)

▼ 문의처

■ IBK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2588

▶ 2 동반성장협력대출

☑ 지원대상

■ 협약기관과의 "동반성장협력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약기관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우량 중소·중견기업에 대출을 지원(대출 조건은 협약기관별로 상이)

☑ 문의처

3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으로 다음 지원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분야) 미래 핵심동력 산업 영위 기업, 제조업 혁신분야 영위 기업, 혁신성장 부문 영위 기업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 (운전자금) 1년 이내(장기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3년 이내)
- (시설자금) 일시상환(3년 이내), 분할상환(15년 이내)

▼ 문의처

■ IBK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2588

4 IBK시설투자대출

☑ 지원대상

■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3년 이내), 분할상환(15년 이내)
-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 등을 지원

☑ 문의처

▶ 5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

☑ 지원대상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ESG 경영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의한 ESG 경영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지원내용

- (운전자금) 1년 이내(장기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3년 이내)
- 확인서 등급에 맞춰 동일기업 당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 지원

☑ 문의처

■ IBK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2588

6 IBK토지분양협약대출

☑ 지원대상

-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분양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공공기업
 - 토지분양대금 납부대상 기업 : 토지분양계약금(토지분양대금의 최소 10% 이상)을 납부하고 잔여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의 대출 추천서(또는 협조문)을 받은 기업
 - 사업장 신축기업 :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를 신규 분양(전매 포함)받고 해당 토지에 사업장을 건축하려는 기업

☑ 지원내용

- 토지분양대금 납부 : 토지분양대금의 80%와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의 추천금액 중 작은 금액 이내
- 건축자금 : 사업장 신축기업으로 분양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완납하였거나, 대출한도 미만 금액을 대출받고 일부 금액을 완납한 경우로 분양금액의 80% 범위 내 (단,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와의 협약 내용에 건축자금 지원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문의처

▶ 7 IBK스마트공장지원대출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거나 구축을 완료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시스템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운전자금) 1년 이내(장기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3년 이내)
- (시설자금) 일시상환(3년 이내), 분할상환(15년 이내)
- 동일기업 당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문의처

■ IBK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 1588-2588

▶8 IBK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

☑ 지원대상

-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영위기업
 - 보증기관과의 특별협약에 따른 보증서 발급기업
 - 청년창업사관학교 또는 시제품제작터 추천 기업
 - 대학 내 산학협력단 또는 창업보육센터 내 소재 기업으로 대학, 산학협력단, 창업보육 센터가 추천하는 기업
 - ICT기술 기반 업종을 영위하고 기술평가등급 T4 이상인 기업 또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종 영위 기업 등
 - 정부부처에서「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내용

- (운전자금) 일시상환(1년 이내). 분할상환(5년 이내)
- (시설자금) 일시상환(3년 이내), 분할상환(15년 이내)

₩ 문의처

9 IBK스마트 동산담보대출

☑ 지원대상

■ IoT(사물인터넷)로 관리 가능한 본인 소유의 동산(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유형자산) 최장 4년 이내 분할상환
- (재고자산) 최장 4년 이내 분할상환 or 1년 이내 만기일시 상환(최장 4년까지 연장)

☑ 문의처

(10) 신용보증기금

- 1. 유동화회사보증
- 2. M&A보증
- 3. 매출채권보험
- 4. 팩토링

1 유동화회사보증

☑ 지원개요

■ 개별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자산(회사채, 대출채권)에 기초하여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기업에 지원

☑ 신청자격

■ 중소·중견·대기업(기업별 등급 자격 상이)

▼ 지원내용

- 최대한도 중소 250억원, 중견 1,050억원, 대 1,500억원
- ※ 신용등급별, 매출별, 자기자본 및 차입금별 한도 상이
- 발행금리 : 무보증 공모사채(3년) AAA등급 민평금리 + 등급별 가산금리
 - ※ 후순위증권 : 기초자산 편입금액 × 연율 0.2% ~ 1.8%(신용등급별로 차등)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중견·대기업): 2 02-2014-0221~7 🗏 www.kodit.co.kr

▶2 M&A보증

☑ 지원개요

 ■ 기업의 성장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창업→회수→재투자」로 활발하게 순환할 수 있는 건강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신청자격

■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로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소요자금 지원한도(보증신청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소요자금의 60%~80%이내), 자기자본한도(자기자본의 3배) 및 피인수기업의 인수가치한도(인수예정인 피인수기업 지분의 가치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www.kodit.co.kr

3 매출채권보험

☑ 지원개요

■ 판매기업이 보험기간 동안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해 향후 구매기업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자(신용보증기금)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 신청자격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지원내용

- 보험가입한도 최고 100억원, 보험료율 0.1~5.0% ※ 구매기업의 신용도, 거래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www.kodit.co.kr

4 팩토링

▼ 지원개요

■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 신청자격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지원내용

- 판매기업 최고한도 100억원, 구매기업 최고한도 50억원
 - ※ 구매기업의 신용도, 업종,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구매기업 최고한도 확대 예정(30억원→50억원, 하반기 시행)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www.kodit.co.kr

(11) 기술보증기금

- 1. 기술보증제도
- 2. 기술이전제도
- 3. 지식재산공제제도
- 4.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1 기술보증제도

☑ 지원개요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지원

☑ 신청자격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신기술사업자*인 중견기업
 -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제조업 등이 해당(건설업 및 도소매업 제외)

☑ 지원내용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해 최고한도(30억원)를 초과하는 보증한도 부여 가능

대상기업	개 요	초과한도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70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영위기업 및 산업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설비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받은 기업	100억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산업 부문별 이해도가 높은 기관(관계부처, 단체 등)의 평기를 바탕으로 산업별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대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00억원
M&A 추진 기업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M&A 인수기업	200억원

- ※ 초과한도는 기보와 신보의 보증잔액(유동화회사보증 포함)을 포함하며 보증연계투자 제외
 - 보증상품별 보증료 감면 및 보증비율 우대(기업별 상이)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 054-606-7468 🖳 www.kibo.or.kr

2 기술이전제도

▼ 지원개요

■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신청자격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 지원내용

■ 업무협약 체결, 기술도입부터 양산자금(운전, 시설)까지 금융 지원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 ☎ 051-606-7629 🖳 tb.kibo.or.kr

3 지식재산공제제도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적립한 부금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 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부담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최대 납입부금의 5배까지 대여를 통해 상호 부조하는 공제제도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가입제한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지식재산공제대출(24.1.1일 기준)

대출 종류	대출 금리*	대출 기간	대출 한도
지식재산비용대출	3.25%	5년 이내	부금합계액의 최대 5배
경영자금대출	4.75%	1년	부금합계액의 90%

■ 보증료 감면 0.2%, 기술신탁수수료 할인, 무료 자문서비스,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등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 ☎ 051-606-7535 🖳 ipmas.or.kr

4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 지원개요

■ 판매기업이 매출채권을 기보에 양도하고, 기보는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원금을 회수하는 단기금융서비스

☑ 신청자격

- 판매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중 매출채권을 취득한 중소기업
- 구매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등

☑ 지원내용

- 기보가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매입** 후 **대금**을 **판매기업에 선지급**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 '24년 예산: 1,000억원(분기별 250억원씩 매입)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팩토링추진단 : ☎ 051-606-7353 🖳 www.kibo.or.kr

(12) 한국디자인진흥원

- 1. 디자인-기술협업 인력지원사업
- 2.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1 디자인-기술협업 인력지원사업

☑ 지원개요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 신청자격

■ 창업・중소・중견기업

☑ 지원대상

■ 직전년도 사업 선정에 따라 채용 후 고용 유지한 디자인 인력 또는 당해연도 사업에 선정된 후 신규 채용한 디자인 인력(기업 당 1명)

☑ 지원내용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에 따라 월 1,520천원 ~ 3,015천원 인건비 보조

₩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 ☎ 031-780-2128 旦 job@kidp.or.kr

2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 지원개요

■ 디자인 역량이 취약한 제조기업에 디자인 주도의 컨설팅,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

☑ 신청자격

■ 중소·중견 제조기업, 디자인 수행기업, 컨설턴트 통합 모집

☑ 지원대상

- 컨설팅 : 중소·중견 제조기업 (스마트 그린산단/국가산단 입주기업 우선 선정)
- 수요맞춤지원 : 컨설팅 지원 우수기업 중 스마트 그린산단 입주기업 또는 CMF 온라인 정보 제공 기업

☑ 지원내용

- 컨설턴트 매칭 및 컨설팅 건당 2백만원 내외 지원
- 제조기업 대상으로 CMF 적용 디자인 개선 콘셉트 도출, 스케치, 모델링, 스케일 목업 등 지원

☑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 □ dkworks01@kidp.or.kr

(1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3.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 4.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 5.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도록 지재권 전문가 (특허법인 등)를 통한 대응전략을 제공

☑ 신청자격

■ 국내기업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사업분야별 협·단체

■ 대학·공공연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 지원내용

■ 사업비의 70~50% 지원

(단위: 백만 원, 건·회당 기준)

			71010-E1 7101110	_101-1111	사업비(건	당 최대)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대상	개별	공동*
사전 대비 분쟁 방어 분쟁 대비	사전	특허침해분석 (FTO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	38
	대비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 NPE 위험특허 대응	국내기업	45(15)**	60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협·단체	50	70(85)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100	
		라이선스 협상전략	특허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65
	사전 준비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침해분석		25	_
권리 행사 분쟁 대응	ᆸ재	특허권행사 (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국내기업 대학·공공연	100	_
	대응	특허권보호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대응전략	717 001	47	_

^{* &#}x27;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 원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02-2183-5882~6 🖳 www.koipa.re.kr

^{**}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 지원의 총사업비는 건당 최대 15백만 원, 협·단체만 지원

▶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지원개요

■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한 개별·공동대응의 맞춤형 전략 제공

☑ 신청자격

■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 단, 협의체 구성시, 중소·중견기업의 과반수 참여 필요

☑ 지원내용

■ 사업비의 70~50% 지원

(단위: 백만 원, 건·회당 기준)

기비 TIOIO취		TIQO전		사업비(건당 최대)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개별대응	공동대응	
권리 보호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12	-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분쟁 대응 전략 지원	40 12(0P산청	_	
분쟁	상표무단선점 대응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40	60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40	60~100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02-2183-5896 🖳 www.koipa.re.kr

3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 지원개요

■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기업 위조상품 대응 지원

☑ 지원분야

■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 신청자격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대상 국가에 지식재산권(상표, 디자인, 특허 등)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우리 수출기업

☑ 지원내용

■ 모니터링 : 대상 국가·사이트 내 위조상품 식별 및 보유 지재권에 근거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등을 통해 위조상품 모니터링 결과 제공

■ 차단신청 : 기업의 검증을 통해 차단 희망한 위조상품 URL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대상

으로 지재권 침해신고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결과리포트 : 차단신청 결과에 대한 통계 및 분석자료 등 리포트 제공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80~40% 지원

78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十 元		현금	현물
소기업	총 사업비의 80%	10%	10%
중기업	총 사업비의 70%	20%	10%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30%	20%
대기업	총 사업비의 40%	40%	20%

[※]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45백만 원까지 지원, 현물은 사업 투입인력 등을 지칭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02-6196-2052, 2055 🖳 www.koipa.re.kr

▶ 4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 지원개요

■ 해외 현지에 진출(예정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 법률자문과 지재권 출원 및 분쟁·침해 초동대응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국가

-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의 관할 40개 국가
- ※ 센터별 관할국가는 홈페이지 사업내용 참조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사업비의 70~50% 지원

구분	지원유형	TI의I내용	기업부담	비율(현금)
丁正	시면규정	원유형 지원내용		중견
권리 보호	지재권 출원지원	해외 40개국에 출원하는 해외 현지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중 일부 지원	50%	E00/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지원	해외세관에 지재권 등록시 소요되는 수행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30%	50%
분쟁대응	지재권 침해피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피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구제에 따른 비용 및 제반 절차 지원		
	지재권 분쟁	지재권 분쟁시 현지 로펌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불필요한 소송 예방을 위한 법률의견서, 감정서(FTO 등) 등 작성·검토지원	30%	50%
	기타 지재권이슈 대응	비밀유지협약서(NDA), 지재권 관련 계약서 조항 및 라이선스 계약 등 작성 및 검토 지원		

[※] 구분별/지원유형별 지원한도는 홈페이지 사업내용 참조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1600-9099 🖳 www.koipa.re.kr

▶ 5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개요

■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의 유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규모) 60개사
 - *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20개사,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25개사*,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15개사
 - ※ 단, 중견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 (컨설팅 내용) 기업이 보유한 기술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제시

구분	주요내용	비고
사업안내 및 교육	IP-MIX 전략 설명 및 기술보호의 필요성 특허·영업비밀 활용체계 교육 IP-MIX 전략 업종별 사례(소재·부품·장비·ICT 화학 등) 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안내	영업비밀 보호센터
현황 분석 결과 리뷰	 대상기업·기관 속한 기술 분야에서의 IP-MIX 전략 성공·실패 사례 (동종업계 특허 분석을 통해 도출)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업·기관의 기술보호 현황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및 개선점 제안 직무발명 관련 사내 관리체계 구축 교육 	자문위원단 (기술전문가)
추가컨설팅 (요청시)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 전략 수립 시 기술보호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 제공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등록 등 전략 수립 시 기술보호 및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 제공 신청서 제출 시 지원사업 신청양식에 추가 선택에 체크하고, 컨설팅현장에서 추가컨설팅 접수가능	영업비밀 보호센터 자문위원단 (기술전문가)
기타	• 지식재산관리 기본규정 제공	영업비밀 보호센터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 ② 사업 -

- (컨설팅 방식) 지식재산전문가(변리사)와 센터 전문가 총 2명이 방문하여 보고서 브리핑 및 질의답변 등 컨설팅(1일)
- (컨설팅 기간) 1일(추가컨설팅 신청 時 2일)
- (기업부담금) 없음

☑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 (컨설팅 내용) 기업 규모 및 경영 현황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정보자산 관리체계 설정, 제도 적·인적 부문의 관리조치 마련 및 물적 부문에서 필요한 보안설비* 제시
 - * 보안솔루션 구매 및 정보시스템 구축은 미지원

■ 지원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도적관리	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등급분류 지원·감수,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
인적관리	비밀준수의무 부과,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내·외부자 서약서 검토 등
물적관리	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

-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전문가 및 센터 보안 인력이 함께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기간) 4일 방문*
 - * 컨설팅 일정 확대를 원하는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협의 가능(90만원/1일)
- (기업부담금) 현금 900,000원
 - ※ 중견기업 대상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총 비용의 25%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 1666-0521 旦 tsep_help@koipa.re.kr

(14)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1. 특허전략 지원 사업(IP-R&D 전략지원)
- 2. 특허·디자인 융합 IP-R&D 전략지원 사업
- 3.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

▶1 특허전략 지원 사업(IP-R&D 전략지원)

☑ 지원개요

■ 지재권(IP)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한 맞춤형・밀착형 특허전략 지원

☑ 신청자격

■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자유공모형, 기관연계형) 및 특정 분야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국가전략기술, 산업부 소·부·장 연계형)

☑ 지원내용

■ 자유공모형 IP-R&D 전략 지원: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신사업(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방향,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

(단위: 백만원, VAT포함)

과제유형	지원내용		과제당 사업비	기업부담금 (중견기업40%)	
			사람미	현금	현물
R&D수행 IP전략형	특허 분석을 통하여 R&D 과제의 기술요소별 세부 R&D 수행 전략 및 특허창출 전략 제시	12주	60	16	8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신시업 개발을 위한 핵심 특허 대응, R&D 방향,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	20주	100	26	14
IP-허가전략 연계형	제약·바이오, 의료기기·화장품 분야 등에 있어서 특허분석 중심으로 허가전략까지 연계한 IP-R&D 전략 수립				
밸류업 IP-R&D	기술가치 평가와 연계하여 기술(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보강 전략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제시	24주	120	32	16
IP-R&D	끼업 비즈니스 수요 기반의 신사업 진출 및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신제품 연계 IP-R&D 전략 제시				

■ 국가전략기술 IP-R&D 전략 지원 : 반도체,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IP-R&D 전략지원 제공

(단위: 백만원, VAT포함)

과제유형	- · · · · · · · · · · · · · · · · · · ·		ハント コントー		부담금 기업40%)	
			시티기	현금	현물	
R&D수행 IP전략형	특허 분석을 통하여 R&D 과제의 기술요소별 세부 R&D 수행 전략 및 특허창출 전략 제시	12주	60	16	8	

■ 기관연계형 IP-R&D 전략 지원: R&D 주요부처(산업부, 중기부, 해수부, 환경부 등) 및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한 정책과제 수행기업 대상 IP-R&D 전략지원 제공

(단위: 백만원, VAT포함)

과제유형	지원내용		과제당 사업비	기업부 (중견기	업40%)
			시티미	현금	현물
R&D수행	특허 분석을 통하여 R&D 과제의 기술요소별 세부 R&D	12주	60	16	8
IP전략형	수행 전략 및 특허창출 전략 제시	12—	00	10	0
신/술·신시업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신사업 개발을 위한	20天	100	26	1./
IP전략형	핵심특허 대응, R&D 방향,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	20주	100	20	14

■ 산업부 소·부·장 연계형 IP-R&D전략 지원: 산업부 및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협의를 통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정책과제 수행기업 대상 IP-R&D 전략지원 제공

(단위: 백만원, VAT포함)

과제유형	지원내용	기간	과제당 사업비	정부 지원금	기업부담금 (중견기업40%) 현금
신기술·신시업 IP전략형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신사업 개발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R&D 방향,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	20주	90	45	45

☑ 문의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사업팀 202-3287-4232, 4201, 4262 ⊠ ippro@kista.re.kr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 R&D 사업관리 시스템 : 🗕 biz.kista.re.kr/ippro

▶2 특허·디자인 융합 IP-R&D 전략지원 사업

☑ 지원개요

■ 제품 중심의 특허·디자인·브랜드 및 서비스 융합 개발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밀착형 R&D 서비스 제공

☑ 신청자격

■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단위: 백만원, VAT포함)

과제유형	지원체계		지원내용	지원 기간	정부 지원금	기업 부담금	
	전문위원	협력기관		기간	시전금	현금	현물
특허・디자	특허	특허	제품 관련 IP 및 환경 분석에 기반한				
는 개발(PI)	디자인	제품 디자인	품질·기능이 향상된 디자인 개발 및 IP 융합 전략지원				
특허·브랜	특허	특허	IP 및 환경 분석에 기반한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IP 융합 20주 전략지원	IP 및 환경 분석에 기반한 제품 인지도			
드 개발(BI)	디자인	브랜드		20주	120	24	24
트리. 내비	특허	특허	시장·사용자·경쟁사 IP 분석 등을 통하여				
특허·서비 스 개발(SI)	디자인	UX/UI 서비스 방법특허·UX/UI 디자인 개발 디자인 전략지원					

☑ 문의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사업팀 202-3287-4232, 4201, 4262 ⊠ ippro@kista.re.kr
- IP R&D 사업관리 시스템: 🖳 biz.kista.re.kr/ippro

▶ 3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

☑ 지원개요

■ 국제표준 획득 및 표준특허 확보가 가능한 산·학·연에 표준특허창출 전략을 지원하여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 극대화

☑ 신청자격

■ 국제표준 관련 연구개발·표준화 활동을 수행중인 중견·중소기업 등

과제 유형		지원 대상 과제
	인큐베이팅	표준화 활동·표준 특허 확보 경험이 없는 '표준화 초보 기관'
단년지원 R&D		국제표준 관련분야 연구개발을 수행중인 산학연 등
	표준화	국제표준 획득을 목표로 표준화 활동을 수행중인 산학연 등
다네크지의	전주기 지원	다년 지원을 희망하는 연구개발, 표준화 활동 수행 중인 산학연 등 * 연구 수행 전주기에 걸쳐 표준특허 확보전략 장기지원
다년지원	차세대 이동통신 전주기 지원	6G 등 미래 이동통신 정부 R&D 과제를 수행 중인 산·학·연

▼ 지원내용

- (단년지원) 특허·표준을 분석하여 표준특허 확보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 수행, 특허 창출, 표준 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 제공
- (다년지원) 표준화 아이템 발굴을 위한 R&D 방향 수립, 청구항 설계·보정, 표준안 개발, 표준화 회의 대응 등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지원

(단위: 백만원)

과제유형			지원기간	정부	지원기관	부담금	
	의제ㅠ8			시전기간	지원금	현금	현물
	인큐베이팅				77	11	22
단년지원	R&D			9(개월)	56	8	16
	표준화				35	5	10
다.자원	전주기지원	1년차	부처연계	6	28	4	8
			자유공모	9	35	5	10
		2년차~		11	42	6	12
	차세대 이동통신 전 주기 지원	2년차~		11	42	6	12

☑ 문의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사업팀 **☎** 02-3287-4232, 4201, 4262 ⊠ ippro@kista.re.kr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포털 : 🗕 biz.kista.re.kr/epcenter

(15) 한국자산관리공사

- 1.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 2.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1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 지원개요

■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보증)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

☑ 신청자격

■ 기업 :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담보부동산 :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지원내용

■ 담보부동산 평가를 통한 신용공여한도 설정 후, 신용공여약정 체결 및 지급보증서 발급

☑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 1588-3570 🗕 oncorp.kamco.or.kr

▶ 2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 지원개요

■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 매매계약 등으로 인수하여 신속한 정상화 지원

☑ 신청자격

- 기업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금융회사 치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
 - ※ 매입대상 자산 : 법인소유의 사옥·공장 등(군사보호지역,자유무역지역 등 관련 법령상 매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 협약 금융회사가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금융회사 차입 상환자금 및 추가 운전자금
- 자산관리공사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컨설팅 및 정책자금지원 등
- 재임대계약과 우선 매수권 부여를 통한 계속적 사업기반 유지

☑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 1588-3570 🗕 oncorp.kamco.or.kr

(1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 내일채움공제
- 2. 중소·중견기업 계약학과

1 내일채움공제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재직자' 및 '채용 기업'
 - 재직자 : 중견·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핵심인력, 연령제한 없음)
 - 기업 : 중소·중견기업(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재직근로자가 사업주와 1:2이상 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 5년간 납입시 5년간 2,000만원 이상 공제금 적립
 - ※ (중소·중견)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 인정, (중소)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 (핵심인력)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근로소득세 중소 50%, 중견 30% 감면

☑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 ☎ 고객센터 1588-6259 🖳 www.sbcplan.or.kr

▶ 2 중소·중견기업 계약학과

☑ 지원개요

■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일·학습 병행 문화 확산 통해 중소기업에 인력유입 촉진 및 인재 양성, 장기재직 유도

☑ 지원대상

■ 학생 : 현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 채용

예정자(채용조건형), 특성화고 등 졸업(예정)자(채용조건형 영마이스터)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기업 : 중소·중견기업(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학생 : 재교육형 일반 65% 그 외 유형 100% 국고 지원

■ 대학 : 학과운영비 학기당 35백만원 국고 지원(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17) 기타기관

- 1. (특허청) 지식재산권 수수료 감면제도
- 2.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 3. (관세청)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 4.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
- 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 6.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 7.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 8.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 9. (FTA종합지원센터)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 10.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 (특허청) 지식재산권 수수료 감면제도

☑ 지원개요

■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감면

☑ 신청자격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지자체 등

☑ 지원내용

감면대상자	감면율(최초 3년간)	감면율(4년차 이후)	
• 중소기업	70%	50% (~존속기간)	
• 중견기업	30%	30%(~9년차)	
• 중소·중견기업 중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20% 추가(4~9년)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기관의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료	30% 감면(중견기업, 연간 2건 한정)		

☑ 문의처

■ 특허청 : ☎ 대표번호 042-481-8756 🖳 www.patent.go.kr

2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 지원개요

■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 비용을 예외적으로 국가가 일정조건 하에 보전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 지원

유형	설명
관리대상화물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부두직통관화물	부두 내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 경유 없이 반출하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적재지검사수출화물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

☑ 문의처

■ 관세청 : ☎ 고객센터 국번없이 125 🗕 www.customs.go.kr

▶3 (관세청)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 지원개요

■ FTA 활용 중소 수출기업이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검증 대비 업체별 맞춤형 지원

☑ 신청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원산지 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 상호출자제한집단, '22~'23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를 위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최대 200만원, 매출액 구간별 차등 지원

☑ 문의처

■ 관세청 : ☎ 고객센터 국번없이 125 🗕 www.customs.go.kr

4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개요

■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재취업 촉진,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내용

-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자(고용창출장려금) 및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활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 공모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요건형 :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매출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로 고용유지하는 경우 지원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고령자고용장려금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업주를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 문의처

■ 고용노동부 : ☎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 www.ei.go.kr

▶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개요

■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게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소속기관 포함),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사회현안 해결부문에 한함)
 - ※ 초기중견기업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지원내용

■ 데이터·AI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및 新서비스·제품 창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 식의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 지원

₩ 문의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바우처 : 2 1833-2246 및 www.kdata.or.kr

▶ 6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 지원개요

■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으로 업무현장 및 사업장 외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

▼ 지원대상

■ 해당 분야 기술력·장비 등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지원내용

- 훈련비, 훈련장려금, 기업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수당 등 훈련실시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 재직자(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고숙력 일학습병행)
 - ※ 재학생(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문대 재학생단계, IPP형 일학습병행)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고객센터 052-714-8833 🗕 www.hrdkorea.or.kr

▶ 7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 지원개요

■ 국가의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의무이행 유도

☑ 신청자격

■「순환경제사회법」제15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2억원, 총사업비의 50% 이하 지원 ※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 ☎ 032-590-5067

▶8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 지원개요

■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

▼ 신청자격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등

▼ 지원내용

-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중소 80%, 중견 60% 국고 지원)
 - ※ 수주활동지원.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EDCF 연계 목적 조사·분석지원. 현상공모 및 국기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 정책지원

₩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 02-3406-1103

9 (FTA종합지원센터)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 지원개요

■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신청자격

■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종합 컨설팅 및 기초컨설팅(수출기업 원산지증명 또는 협력기업 원산지 확인) 지원

☑ 문의처

■ FTA종합지원센터 : ☎ 1380 🗕 www.okfta.or.kr

10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지원개요

■ 정부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여행경비(휴가비)를 지원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지원내용

- 참여 기업의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 시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고, 적립된 해당 금액을 근로자가 '휴가샵'에서 사용 가능
 - 휴가샵은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 여행, 교통편 등을 판매 ※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 20만, 기업 15만, 정부 5만원

☑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전담 지원센터 : ☎ 1670-1330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2. 사업